

서울특별시 물가대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안번호	1971
------	------

2024. 9. 4.

기획경제위원회

I. 심사경과

-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4년 7월 1일, 김현기 의원(찬성자 12명)
- 회부일자 : 2024년 8월 14일
- 상정결과 : 【서울특별시의회 제326회 임시회】
 - 제3차 기획경제위원회(2024. 9. 4.)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 및 답변, 의결(원안가결)

II. 제안설명의 요지(김현기 의원)

1. 제안이유

- 현행 조례는 서울시 대중교통요금에 대해 시민 및 서울특별시의회의 의견을 수렴하여 최종적으로 서울특별시 물가대책위원회가 심의를 하는 절차적 규정을 마련하고 있으나, 시장의 자문기구인 서울특별시 물가대책 위원회가 천만 시민의 대표기관인 서울특별시의회의 견해를 심의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측면이 있어, 관련 절차를 개선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서울시 대중교통요금에 대해 물가대책위원회의 심의 이후에 서울특별시 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절차를 개선함(안 제10조제2항).

3. 합고사항

가.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

나. 기타 : 신·구조문대비표

III. 검토의견(수석전문위원 이준석)

1. 개정안의 개요

- 동 개정조례안은 시의회 의견 청취 후 물가대책위원회에 상정토록 한 교통요금 조정안에 대한 의견절차를 물가대책위원회 심의 이후 시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순서를 변경하고 띠어쓰기, 축약어 사용 등 조문의 형식상 오기를 수정하기 위해 발의됨.

2. 물가대책위원회의 구성과 역할

- 공공요금은 주무부장관이나 시·도지사가 결정하거나 결정에 관여하는 요금을 말하며, 정부(행정안전부)는 전철, 시내버스, 택시, 도시가스, 상수도, 하수도, 쓰레기봉투 요금을 지방공공요금으로 지정하고 있음.
- 한편 물가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는 물가의 안정과 소비자 보호에 관한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해 설치(1994.3.15.)¹⁾되어▶ 교통요금(시내버스, 마을버스, 고급형을 제외한 택시, 도시철도 요금),▶ 도시가스요금, ▶ 상수도 요금, ▶ 하수도 사용료 등 지방공공요금에 대한 심의·자문을 수행함.
- 그리고 위원회는 서울시의원과 당연직 위원인 서울시 공무원²⁾을 포함해 물가 관련 시민단체와 소비자 대표, 물가문제에 대한

1) 서울시는 법령 또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 승인, 인가 또는 허가하는 사용료, 수수료 및 분담금 등을 자문하기 위해 공공요금심의위원회(1989~1994)를 두고 있었으나 내무부 지침으로 ‘지방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준칙’을 배포하면서 서울시도 조례를 제정하여 기존의 공공요금심의위원회가 물가대책위원회로 변경되었음(1994.3.15.).

2) 기획조정실장, 재무국장, 복지실장, 민생노동국장, 정책기획관

학식과 경륜을 갖춘 대학교수와 전문가, 언론인, 법조인 등 총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됨(임기 2년).

- 최근 3년간 위원회는 ▶ 물가안정화 방안 자문, ▶ 택시요금 조정, ▶ 지하철, 버스 요금 조정을 심의·자문하고자 총 3회 개최되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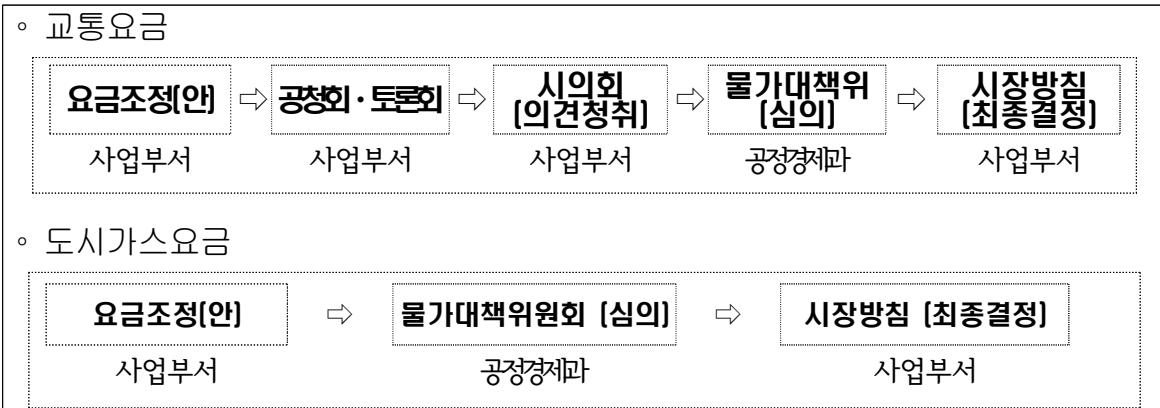
< 최근 3년간 물가대책위원회 개최 이력 >

개최일	안건명	회의결과
2022.5.9.~ 2022.5.13. (서면)	물가 안정화를 위한 시 차원의 추진 방향 및 대책 자문	10명 참여 (총 27명 중)
2022.10.25. (대면)	택시 요금 조정 ① 1단계 - 심야택시 탄력요금제(중형) ※ (시간) 24~04시 → 22~04시 (할증률) 20% → 20~40% - 심야할증제(대형·모범) 도입 ※ (시간) 미적용 → 22~04시 (할증률) 미적용 → 20% ② 2단계 - 기본요금(중·대형, 모범) 조정 ※ (중형) 3,800원 → 4,800원 (대형·모범) 6,500원 → 7,000원 - 외국인 관광택시 요금 조정 ※ 구간, 대절 요금(0.5~1만원 이상)	원안 가결 - 찬성 16명 (찬성 13, 반대 3)
2023.7.12. (대면)	지하철, 버스 요금 조정 ① 지하철 : 단계적 요금 인상 - 기본요금 '23.10월 150원,	원안 가결 - 찬성 17명 (찬성 15, 회피 2)

3. 교통요금 조정안 의견 청취 절차의 변경(안 제10조)

- 현행 조례는 다른 요금과 달리 시내버스, 마을버스, 택시, 도시 철도 등 교통요금에 대해서만 위원회 상정 전에 공청회·토론회 개최, 시의회의 의견청취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음(제10조제1항).

< 대중교통요금과 도시가스요금의 조정 절차 >



- 이는 교통요금이 서민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크고, 사실상 별도의 기준에 따라 자동 산정되는 다른 지방공공요금과 달리 전적으로 서울시장이 결정권을 갖고 있기 때문임.
 - 상 · 하수도 요금은 정부(행정안전부)의 예규인 「지방상수도 요금 산정요령」에 따라 산정되고, 「수도법」과 「하수도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에 변경된 요금을 규정함.
 - 전량수입되는 도시가스는 정부(산업통상자원부)의 '도시가스요금 원료비 연동제 시행지침'에 따라 민수용은 2개월(홀수월), 상업용 · 도시가스발전용은 1개월 주기로 산정됨.
- 현재 교통요금을 조정하기 위해 서울시는 공청회 · 토론회 의견이 반영된 요금조정안을 시의회에 제출하면 요금조정의 필요성, 관련 기관과의 사전 협의, 요금조정 기준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교통위원회에서 의견을 제시함.
 - 교통위원회는 조정안에 대해 원안 동의 외에도 부대의견을 제시하며 조건부 동의를 할 수도 있음(2023년 지하철 · 버스 요금 조정).

< 2023년 지하철·버스 요금 조정 의견청취 심사결과 >

서울시 조정안	심사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하철 단독통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안 : 300원 인상 - 2안 : 400원 인상 ▪ 시내버스 단독통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간·지선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안 : 300원 인상 - 2안 : 400원 인상 ◦ 광역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700원 인상 ◦ 순환·차등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안 : 400원 인상 - 2안 : 500원 인상 ◦ 심야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50원 인상 ▪ 마을버스 단독통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50원 인상 ▪ 수도권 통합환승할인 요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추가요금 : 기본거리 초과시 5km 당 100원→150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심사결과 : 조건부 동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서울시가 제출한 기본요금 인상안 중 지하철과 시내버스 요금을 300원 인상하는 제1안을 기본으로 하되 요금인상은 서민경제의 어려운 여건을 반영하여 하반기에 추진하고 ② 장거리 통행 이용시민의 교통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지하철의 거리비례요금제와 수도권 통합환승할인 요금제의 추가거리요금을 동결하며 ③ 경제적 취약계층인 어린이와 청소년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요금 인상폭을 최소화 하며 ④ 낮은 현금 이용률을 고려하여 현금과 카드요금을 통일하며 ⑤ 추후 요금인상 청취안을 제출할 시 시민의견 수렴 등의 사전 절차를 반드시 지켜서 절차상의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의결함

- 그리고 위원회는 서울시의 당초 요금조정안과 시의회의 의견청취 결과를 종합하여 교통요금 조정안을 심의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서울시장이 교통요금의 조정을 결정함.

< 2023년 지하철·버스 요금 조정 위원회 심의 결과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하철 : 기본요금 '23.10. 150원. '24년 150원 단계적 인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250원(현행) → 1,400원(1단계) → 1,550원(2단계) - 버스 : 노선별 기본요금 인상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text-align: center; background-color: #cccccc;">구 분</th><th style="text-align: center; background-color: #cccccc;">노 선</th><th style="text-align: center; background-color: #cccccc;">인 상 액(원)</th><th style="text-align: center; background-color: #cccccc;">변동사항(원)</th></tr> </thead> <tbody> <tr> <td rowspan="2" style="text-align: center; vertical-align: middle;">시내버스</td><td style="text-align: center;">간선·지선</td><td style="text-align: center;">300</td><td style="text-align: center;">1,200 → 1,500</td></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순환·차등</td><td style="text-align: center;">300</td><td style="text-align: center;">1,100 → 1,400</td></tr> </tbody> </table>	구 분	노 선	인 상 액(원)	변동사항(원)	시내버스	간선·지선	300	1,200 → 1,500	순환·차등	300	1,100 → 1,400
구 분	노 선	인 상 액(원)	변동사항(원)									
시내버스	간선·지선	300	1,200 → 1,500									
	순환·차등	300	1,100 → 1,400									

	광역	700	2,300 → 3,000
	심야	350	2,150 → 2,500
마을버스	마을버스	300	900 → 1,200

- 한편 안 제10조는 시의회 의견 청취 후 위원회에 상정토록 한 교통요금 조정 절차를 위원회 심의 이후 시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순서를 변경하는 것임.

현 행	개 정 안
제10조(의견청취) ① 시장은 제3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u>의한</u> 사항을 위원회에 상정하기 전에 미리 공청회와 토론회 등을 개최해 시민의 의견을 수렴한 후 요금 조정 의견청취안을 작성·제출하여 시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10조(의견청취) ① ----- ----- 따른 ----- ----- ----- 수렴하여야 ---.
<신 설>	② 시장은 제3조제2항제1호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요금 조정 의견청취안을 작성·제출하여 서울특별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생 략)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 이는 교통요금이 시민의 생활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고 다른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큰 대중교통 요금에 대해서는 시의회가 최종적인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책의 최종 결정권자인 시의회의 위상과 책임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 현행 조례와 개정안에 따른 교통요금 조정 절차 >



- 아울러 교통공사 지원, 버스준공영제 실시 등을 통해 대중교통 운영이 서울시의 재정에 의존하고 있는 만큼 예산의 심의·확정권을 가진 시의회와의 협력이 필수적이라는 점에서 개정안의 취지는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됨.
- 다만 교통요금 조정 절차에서 시의회의 의견청취와 위원회의 심의는 기능적으로 상호 보완관계에 있어 절차의 순후를 중요성의 정도로 동일시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음.
 - 위원회는 시의회의 의견청취 결과를 심의하는 것이 아니라 대의기관인 시의회가 시민의 기준에서 서울시 재정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교통요금 조정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면 이에 따라 구체적인 요금조정액으로 산출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 또한 교통요금 산출은 기술적이고 전문성이 강한 분야로, 관련 자료와 인력이 부족한 시의회의 특성상 교통요금 조정안에 대한 수정의견에서 구체적인 요금액을 제시하기 어려운 만큼 시장이 이를 위한 전문가 회의 개최 등 추가적인 절차를 신설함으로써 개정안의 취지에 반해 운영될 우려가 있음.
- 한편 서울시는 동 개정조례안이 시민의 대표기관인 시의회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다는 긍정적인 측면은 있으나, 시의회에 제출되는 의견청취안은 공청회와 토론회 등 시민의견을 수렴하고, 소비자단체, 요금전문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로 구성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안이라는 점이 고려되어야 한다는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하였음.³⁾

- 참고로 동 개정조례안에 대한 상임위원회 의견 조회에서 교통위원회는 시의회가 시민의 대표기관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회신하였다.

< 교통위원회 검토의견 >

- 동 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 제3조제2항제1호 교통요금에 대해 물가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 상정 전에 시민의견 수렴후 요금조정 의견청취안을 작성·제출하여 시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하는 절차를 위원회 심의후 요금조정 의견청취안을 작성·제출하여 시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변경하는 것으로
- 시민의 생활안정에 밀접하게 영향을 주는 교통요금에 대해 서울특별시의회가 최종적으로 의견을 청취하는 것은 시의회가 시민의 대표기관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 할 것임.

IV.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V. 토론요지 : 「없음」

VI. 심사결과 : 「원안가결」 (재석의원 전원 찬성)

VII. 소수의견 요지 : 「없음」

VIII.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3) 17개 광역시·도 중 12개 시·도에는 시의회 의견청취가 없으며, 5개 시·도(서울, 부산, 울산, 광주, 제주)는 물가대책위원회 심의 전에 시·도의회의 의견청취를 거치고 있음. 또한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 및 변경결정 과정도 교통요금 조정과 동일하게 시의회의 의견청취 이후에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고 있음.

서울특별시 물가대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현기 의원 발의)

의안 번호	1971
----------	------

발의년월일: 2024년 07월 01일
발의자: 김현기 의원(1명)
찬성자: 고광민, 김영철, 김용호,
김태수, 박영한, 서호연,
이숙자, 이승복, 이은림,
채수지, 최진혁, 허훈
의원(12명)

1. 제안이유

- 현행 조례는 서울시 대중교통요금에 대해 시민 및 서울특별시의회의 의견을 수렴하여 최종적으로 서울특별시 물가대책위원회가 심의를 하는 절차적 규정을 마련하고 있으나, 시장의 자문기구인 서울특별시 물가대책위원회가 천만 시민의 대표기관인 서울특별시의회의 견해를 심의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측면이 있어, 관련 절차를 개선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서울시 대중교통요금에 대해 물가대책위원회의 심의 이후에 서울특별시 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절차를 개선함(안 제10조제2항)

3. 참고사항

-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
- 다. 기타 : 신·구조문대비표

서울특별시 물가대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물가대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서울특별시의회의장이 추천하는 서울특별시의회의원

제10조제1항 중 “의한”을 “따른”으로, “수렴한 후 요금 조정 의견청취안을 작성 · 제출하여 시의회의 의견을 들어야”를 “수렴하여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시장은 제3조제2항제1호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요금 조정 의견청취안을 작성 · 제출하여 서울특별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10조의2 중 “서울특별시의회”를 “의회”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10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서울특별시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위원회 구성) ① · ② (생 략)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에 대하여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 2. ~ 6. (생 략)	제4조(위원회 구성)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 1. 서울특별시의회의장이 추천하는 서울특별시의회의원 2. ~ 6. (현행과 같음)
제10조(의견청취) ① 시장은 제3조 제2항제1호의 규정에 <u>의한</u> 사항을 위원회에 상정하기 전에 미리 공청회와 토론회 등을 개최해 시민의 의견을 <u>수렴한</u> 후 <u>요금 조정 의견청취안</u> 을 작성·제출하여 시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10조(의견청취) ① ----- ----- <u>따른</u> ----- ----- ----- <u>수렴하여야</u> ----- ----- -----.
<신 설> ② (생 략)	② 시장은 제3조제2항제1호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u>요금 조정 의견청취안</u> 을 작성·제출하여 서울특별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제10조의2(요금조정계획의 제출) 제3조제2항 각 호의 사업자 또는 관련 조합, 협회 및 단체 등은 요금	제10조의2(요금조정계획의 제출) ----- ----- -----

조정계획을 시장 및 서울특별시의
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의회

서울특별시 물가대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비대상 사유서

1. 판단 근거

- 서울특별시 물가대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서울시 대중교통요금에 대해 물가대책위원회의 심의 이후에 서울특별시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절차를 개선하는 내용으로 서울시의 재정수입 순감소나 재정 지출 순증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 비용추계 대상이 아님(안 제10조제2항)

2. 작성자

시의회사무처 재정분석담당관
담당관 오희선
추계세제팀장 김중현
추계분석관 이홍래
☎ 02-2180-7952
e-mail : hong1004@seoul.go.kr

※ 이 서류는 의안 발의 참고 자료입니다.